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07
----------	-----

제출년월일 : 2009. 9.
제 출 자 : 중구청장

1.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내용을 알기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띠어쓰기

-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 ⇒ 울산광역시중구 수입증지 조례

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개정

- 년 1회 → 연 1회
- 교부한다 → 지급한다
- 규정에 의하여 → 따라
- 서식에 의거 → 서식에 따라, 서식으로

3. 근거법규 : 기획감사실-2019(2009. 2. 13)자치법규 전수조사 및 일제정비 계획

4.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2009. 6. 29 ~ 7. 20)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수입증지 조례”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년 1회”을 “연 1회”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전자 계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를 “전자 계기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도”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년간 제3항의 규정에 관한”을 “1년동안 제3 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증지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를 “별지 제4호서식으로 증지불출증을 청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수령하고 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를 “받고, 증지를 지급하여야 한다.”로, “수령하지 아니한다.”를 “받지 않는다.”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교부한다.”를 “지급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증지 판매 수입금은 별지 제5호서식, 계기 및 무인발급기 사용 수입금은 별지 제7호서식으로 일일 결산하여야 한다.

제12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소인된 면을 원부 첨부하여”를 “소인된 면의 원본을 첨부하여”로, “명백히 하여야 한다.”를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증지의 소인) 받은 증지는 사용 즉시, 첨부한 지면과 증지 문체에 걸쳐 선명하게 소인하여야 한다. 소인의 규격은 별표1과 같이 한다.

제16조제1항 중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로, “교부한다”를 “발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환매증에 의거”를 “환매증에 따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로,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의”를 “별지 제4호서식으로”로, “교부한다.”를 “발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거”를 “의하여”로 한다.

제18조 중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	제명 : 울산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p>제4조(증지의 발행) ① (생 략) ②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증지 발행 계획을 수립하여 <u>년 1회</u>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생 략)</p> <p>제5조(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의 사용)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또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의 <u>전자 계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u> ② ~ ③ (생 략)</p> <p>제7조(증지인수 및 보관) ① <u>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된 증지를 인수할 경우에는 구수입금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과 분임정수관이 입회하여야 한다.</u> ② (생 략) ③ 증지취급공무원이 증지를 인수할 때에는 <u>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령증을 제출하여야하며 인수한 증지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u> ④ (생 략)</p>	<p>제4조(증지의 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연 1회</u> ----- -----. 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의 사용) ① ----- ----- ----- ----- <u>전자 계기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u> 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7조(증지인수 및 보관) ① <u>제6조에 따라</u>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별지 제3호서식으로</u> ----- ----- -----. ④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증지의 판매등) ① (생 략)</p> <p>② 구청장은 제1항의 증지취급기관 이외에 따로 증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증지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p> <p>③ (생 략)</p> <p>④ 증지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최근 <u>1년간 제3항의 규정에 관한</u>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p> <p>제10조(증지취급 및 매수) ① 증지취급기관 및 판매인이 증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에게 <u>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u> 증지 매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출납원은 <u>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u> 증지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③ 금고에서는 제2항의 증지불출증과 증지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u>수령하고</u> 증지를 <u>교부하여야 한다.</u> 다만, 증지취급기관이 청구시에는 증지대금을 <u>수령하지 아니한다.</u></p>	<p>제8조(증지의 판매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판매하고자 하는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 에게도-----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1년 동안 제3항에 따른</u> ----- ----- -----.</p> <p>제10조(증지취급 및 매수) ① ----- ----- -----별지 <u>제2호서식으로</u> ----- -----.</p> <p>② ----- -----별지 <u>제4호서식으로</u> 증지불출증을 청구인에게 발급하 여야 한다.</p> <p>③ ----- -----<u>받고,</u> 증지를 <u>지급하여야 한다.</u> ----- ----- 반지 않는다.</p>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판매수수료) ① ~ ② (생략)</p> <p>③ 금고는 제2항의 할인된 금액으로 증지를 <u>교부한다.</u></p>	<p>제11조(판매수수료)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지급한다.</u></p>
<p>제12조(수입금의 정산) ① (생략)</p> <p>② <u>증지 판매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5호서식, 계기 및 무인발급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하여야 한다.</u></p> <p>③ <u>계기 및 무인발급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원부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u></p> <p>④ (생략)</p>	<p>제12조(수입금의 정산)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증지 판매 수입금은 별지 제5호서식, 계기 및 무인발급기 사용 수입금은 별지 제7호서식으로 일일 결산하여야 한다.</u></p> <p>③ ----- <u>그 밖의 -----</u> ----- <u>소인된 면의 원분을 첨부하여 -----</u> ----- <u>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u></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4조(증지의 소인) 증지로서 수령한 것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첨부한 지면과 증지 문체에 걸쳐 명백히 소인하여야 한다.</p> <p><u>제1항의 소인의 규격은 별표1과 같이 한다.</u></p>	<p>제14조(증지의 소인) 받은 증지는 사용 즉시, 첨부한 지면과 증지 문체에 걸쳐 선명하게 소인하여야 한다. 소인의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p>
<p>제16조(증지의 환매) ① 판매인이 판매계약을 해지하거나 판매인이 사망한 때에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u>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할인매입 가격으로 구청장에게 환매 청구할 수 있다.</u></p>	<p>제16조(증지의 환매) ① ----- ----- <u>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u> -----.</p>

현 행	개 정 안
<p>② 구청장은 제1항의 환매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u>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u> 환매증을 청구인에게 <u>교부한다.</u></p> <p>③ 금고에서는 제2항의 <u>환매증에 의거</u> 청구인에게 제11조제3항의 매입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한다.</p>	<p>② ----- ----- <u>별지 제4호서식으로</u> ----- <u>발급한다.</u></p> <p>③ 금고에서는 제2항의 <u>환매증에 따라</u> ----- -----.</p>
<p>제17조(증지의 교환) ① 증지취급기관 및 판매인이 보유하는 증지가 오손·훼손 등으로 사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u>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u> 구청장에게 교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인이 증지 취급기관 및 판매인의 고의 또는 <u>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u>별지 제4호서식의 교환증</u>을 청구인에게 <u>교부한다.</u></p> <p>③ 금고에서는 제2항의 교환증에 <u>의거</u> 청구인에게 증지를 교환하여야 한다.</p>	<p>제17조(증지의 교환) ① ----- ----- ----- <u>별지 제2호서식으로</u> ----- ----- <u>증대한 과실이</u> <u>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u></p> <p>② ----- ----- ----- <u>별지 제4호서식으로</u> ----- <u>발급한다.</u></p> <p>③ ----- <u>의하여</u>, -----.</p>
<p>제18조(출납정리) 출납원은 <u>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u> 장부를 비치하고 증지 출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p>	<p>제18조(출납정리) ----- <u>별지 제6호서식으로</u> -----.</p>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707)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9. 9. 2(수)
- 나. 제출자 : 중구청장
- 다. 위원회 회부 : 2009. 9. 7(월)
- 라. 위원회 상정 : 2009. 9. 17(목)

3.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내용을 알기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4. 주요골자

가. 제명 띄어쓰기

-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 ⇒ 울산광역시중구 수입증지 조례
- 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개정
 - 년 1회 → 연 1회
 - 교부한다 → 지급한다
 - 규정에 의하여 → 따라
 - 서식에 의거 → 서식에 따라, 서식으로

5. 관련법규

-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 기준

6.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홍성춘)

- 검토의견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